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단 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II. 주요골자

- 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함 (안 제7조)
-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비율과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직원의 겸업금지대상에 단서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 안 제12조)
- 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의거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함 (안 제21조)

III. 검토의견

1. 배경 및 경위

- 본 개정조례안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단의 이사정수를 재 조정하는 것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사외이사제”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경영진과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토록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의하면

이사의 합리적 구성을 통한 이사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①비상임이사 중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사업의 성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②비상임이사 정수의 50%이상을 변호사, 회계사, 학제인사 등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현재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14개소 중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외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2. 주요 검토사항

- 안 제7조(임원)에서 이사의 수를 이사장을 포함하여 종전 5인에서 7인으로 늘린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 정수의 50%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가 2명, 비상임이사가 2명이므로 조례개정이 되면 앞으로 3명의 이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중 2명 이상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충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 안 제9조(이사)제1항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를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규정 역시, 이사회 구성에서 비상임 외부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 기타 상근이 아닌 임원의 겸업금지 예외규정(안 제12조 단서) 및 공단 결산기한 변경(안 제21조제1항) 등은 상위법 개정(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66조 제1항)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0호)

第58條 (任員)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한다. 다만,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社長을 任命할 때는 社長推薦委員會에서 推薦된 者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④社長推薦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이사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임면한다.

第61條 (任·職員의 겸직제한)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任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第62條 (理事會) ①公社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決議하게 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사장을 포함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理事會의 權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66條 (決算) ①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을 당해 事業年度終了후 2월 이내에 完了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 (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③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 :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기업외부인 중에서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언론인·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을 선임하는 비상근이사를 말하며, 최대주주와 경영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임.

사외이사는 경영진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이사라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사회와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 등 사내이사(경영이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외이사에게도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이 대부분임. 다만 일부 기업(KT 등)은 급여 대신 이사회 소집 때마다 거마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음.

우리나라는 97년 말 IMF 사태 직후인 98년부터 사외이사제가 적극 도입되어, 현행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 상장규정 등에 의하면 모든 상장·등록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 벤처기업 제외)은 전체 임원의 4분의 1 이상(최소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자산 총계가 2조원을 넘는 대형 법인의 경우는 “전체 동기이사의 2분의 1 이상,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사외이사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사외이사를 통하여 사내이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경영감시장치로서의 기능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임된 후는 다른 임원들과도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경영진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평가 및 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1년에 몇번 안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로 경영진의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안건을 판단함으로써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물론, 복잡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만한 전문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님.